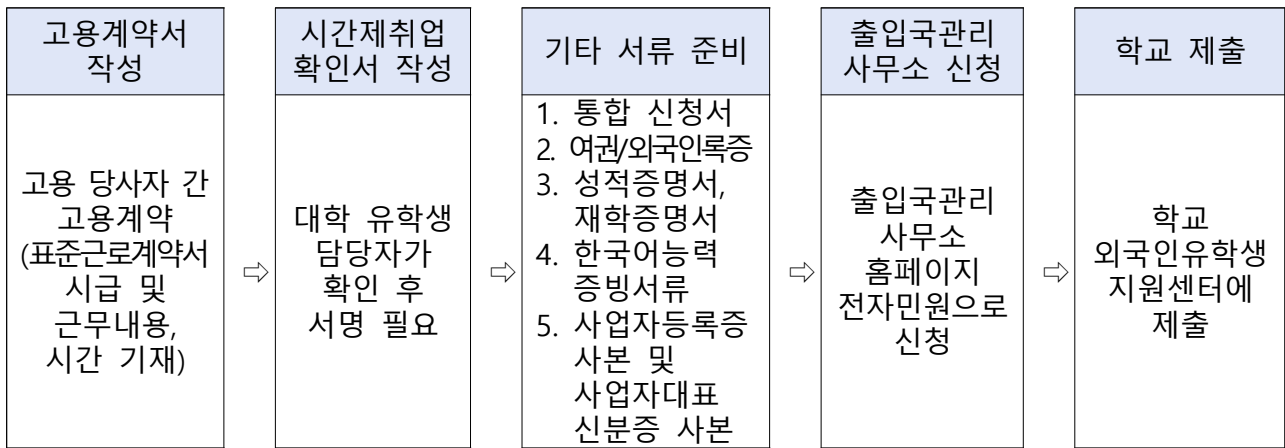


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(아르바이트) 안내

(1) 기본원칙 :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시간제취업(단순노무 등) 활동에 한정

- ※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[별표1-2] 에 해당하는 취업활동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해당 자격별 개별 지침 적용 (예시, 대통령 영어봉사장학생, 회화지도강사, 전문 통·번역 등)
- ※ 개인과의 교습행위는 그 행위의 장소, 대상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엄격 제한

< 허가 절차 >



(2) 허용 대상

- 유학(D-2) 또는 일반연수(D-4)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.

※ 어학연수생은 자격 변경일(사증소지자는 입국일)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자에 한함. 초·중·고등학교 재학 어학연수생(졸업예정자는 가능)은 D-4 사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시간제취업허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

- 유학과정 경과(전문학사2년, 학사4년) 후 학점미달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예외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※ 다만, 석·박사과정 종료자에 한해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생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학점미달, 출석률 미달 등 불성실한 학업으로 인한 졸업지연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

- 위와 같이 허용하는 경우도 주당 30시간에 한하며, 휴무일, 공휴일, 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이 배제됩니다.

※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거나 자진해서 출국할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으며,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
(3) 허용 분야

- 외국인유학생의 아르바이트가 허용되는 분야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.
 - 일반 통역·번역, 음식업 보조, 일반 사무보조 등
 - 공적 확인을 받은 자국 정부 발급 범죄경력증명서 및 법무부장관 지정 의료기관 발행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한 경우 영어키즈카페, 영어캠프에서 안전보조원, 놀이보조원 등의 활동
 -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
 - ※ 다만, 상기 시간제취업 허용분야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
 - 토픽4급(KIIP 4단계이수) 이상인 경우 제조업 예외적으로 허용(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제조업, 건설업이 있는 경우 제한)
 - 시간제 또는 전일제 계절근로 활동
 - 방학기간 중 학위과정(D-2) 유학생의 전문분야(E-1~E-7) 허용 분야에서 연수수습 등 인턴사원 형태로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인턴 활동
 - ※ 다만,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

(4) 허용 범위

- 한국어 능력별, 학위과정별 허용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
대학유형	학년	한국어 능력 기준 (1)TOPIK (2)사회통합프로그램 (3)세종학당		시작 시기	허용시간		인증대학교, 성적우수자 혜택
					주중	주말 방학기간	
어학연수 과정	무관	①TOPIK 2급	X	6개월 이후 가능	10시간		10시간
		②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③세종학당 중급1 이상 이수	O		20시간		25 시간
전문학사	무관	①TOPIK 3급	X	즉시 가능	10시간		10시간
		②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③세종학당 중급1 이상 이수	O		25시간	제한없음	30시간
학사	1-2학년	①TOPIK 3급	X	즉시 가능	10시간		10시간
		②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③세종학당 중급1 이상 이수	O		25시간	제한없음	30시간
	3-4학년	①TOPIK 4급	X	즉시 가능	10시간		10시간
		②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③세종학당 중급2 이상 이수	O		25시간	제한없음	30시간
석·박사	무관	①TOPIK 4급	X	즉시 가능	15시간		15시간
		②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③세종학당 중급2 이상 이수	O		30시간	제한없음	35시간

(5) 신청서류

- 신청서
- 여권/ 외국인등록증
- 시간제취업 확인서
- 성적증명서
- 한국어능력 증빙서류
-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대표 신분증 사본
-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(시급 및 근무내용, 시간이 포함되어 있을 것)

(6) 아르바이트하기 위한 채용 어플/사이트

- 알바몬: <https://www.albamon.com>
- 벼룩시장: <https://m.findjob.co.kr> / <https://www.findjob.co.kr>
- 알바천국: <https://alba.co.kr>
- 동네알바: <https://www.dongnealba.com/>

※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:

- ❖ 출입국관리사무소 사이트: <https://www.immigration.go.kr/immigration/index.do>
- ❖ 전자민원 사이트: <https://www.hikorea.go.kr/Main.pt>

※ 출처: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(2024.6.15. 기준)

<https://easylaw.go.kr/CSP/CnpClsMain.laf?popMenu=ov&csmSeq=508&ccfNo=3&cciNo=7&cnpClsNo=1>